

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80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은 인재개발원, 데이터센터, 서울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과 교육생, 강사 등이 이용하는 시설임
- 나. 단체급식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추진, 식당 이용자에게 양질의 수준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인재개발원 구내식당
-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(서초동 391)
- 시설규모 : 811m²
 - 릴리홀 : 647m²(식당 486m², 주방161m²), 로즈홀 : 164m²



나. 운영 개요

- 이용대상 : 인재개발원, 데이터센터, 서울연구원 직원 및 교육생 등
- 이용인원 : 1일 평균 약 800명('19년 기준)
- 급식단가 : 조식 2,000원, 중·석식 4,000원
- 근무인원 : 4명(영양사 1, 조리사 1, 취사원 2)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위탁기간 : 2년(2021. 1. 1 ~ 2022. 12. 31.)
- 위탁업무
 - 식재료를 구입·조리·가공한 급식(조·중·석식)을 판매하는 행위
 -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, 종업원 복장 및 복무관리, 시설물 청결유지 및 소독, 위생 점검(감사) 수감 등 구내식당 운영 및 단체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
-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 - 소요예산 : 없음(수익창출형 민간위탁)
 - ※ 2019년 연간매출 : 764,055천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
라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
 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3, 제6조
 -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 및 제10조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1차 : 1999. 8. 23. ~ 2002. 8. 22.(3년, CJ 푸드시스템)
- 2차 : 2002. 8. 23. ~ 2004. 8. 22.(2년, CJ 푸드시스템)
- 3차 : 2004. 8. 23. ~ 2006. 8. 22.(2년, <주>ECMD)
- 4차 : 2006. 8. 23. ~ 2008. 8. 22.(2년, 현대푸드시스템)
- 5차 : 2008. 8. 23. ~ 2010. 12. 31.(2.4년, 현대그린푸드)
- 6차 : 2011. 1. 1. ~ 2012. 12. 31.(2년, 현대그린푸드)
- 7차 : 2013. 1. 1. ~ 2014. 12. 31.(2년, 동원홈푸드)
- 8차 : 2015. 1. 1. ~ 2016. 12. 31.(2년, 삼주외식산업)
- 9차 : 2017. 1. 1. ~ 2018. 12. 31.(2년, 아워홈)
- 10차 : 2019. 1. 1. ~ 2020. 12. 31.(2년, 아워홈)

마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은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서,
- 약 20여 년간 전문 단체급식 업체 위탁운영을 통해 전문화된 인력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교육생 및 직원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음
- 전문업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식당 운영이 가능하며, 식자재 대량 구매를 통해 낮은 단가로 구매하여 비용 절감도 가능
- 직영 운영 시, 정규직·계약직 직원 고용예산 확보 필요 등 별도 비용 발생이 수반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4조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
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3,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
○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, 제10조

제6조(후생복지시설의 운영)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·구내식당·매점

제10조(운영의 위탁 등)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○ 구내식당 민간 재위탁 추진 기본계획
(인재기획과-4173, '20. 4. 7.)

○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'적정' 의결('20. 5. 12.)

※ 작성자 :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김우람(☎3488-2032)